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에 장기재직휴가(특별휴가)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행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4. 16. ~ 05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”을 “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(제20조제18항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) 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「국가공무 원 복무규정」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 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 다.	제11조(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「국가공무 원 복무규정」(제20조제18항은 <u>제외한다</u>)----- ----- 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7412